

설문지

No. □□□

체육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조직 내 인권 침해요소가 없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문제발생에 대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작성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통계 자료로만 활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설문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조사기관: 한국정책리서치
의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구 분	문항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혼인여부	① 미(비)혼 ② 기혼 ③ 기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① 일반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기간제(전일제) ④ 기간제(단시간) ⑤ 기타(비정규직)
직 급	① 관리직 ② 일반직
현 직장 근무기간	()년 ()개월
조직규모 (종사자수)	① 5인 미만 ② 5-10인 미만 ③ 10-30인 미만 ④ 30-100인 미만 ⑤ 100인 이상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1. 귀하가 소속한 단체·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체육관련 공공기관
- ② 시도 체육회
- ③ 시도 장애인 체육회
- ④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 ⑤ 시군구 체육회
- ⑥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
- ⑦ 시도 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 ⑧ 시도 장애인 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 ⑨ 시군구 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 ⑩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 ⑪ 기타 체육관련 기관단체

2. 다음은 조직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의 조직문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 문화가 강하다				
2) 관리자가 직원에게 지휘·감독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3) 퇴근시간이 지나서 업무지시가 주어지는 경우, 내일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4) 우리 조직은 성희롱(성폭력)문제를 제기하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이다				
5) 우리 조직은 휴가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내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6) 우리 조직에서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7) 우리 조직은 여성보다 남성이 주요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8) 우리 조직은 직급이나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양/최양/미스리, 아줌마(아저씨), 아가씨(총각), 고용상 지위(인턴아) 등으로 부른다.				
9) 우리 조직은 여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의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예를 들어 여자는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여성이 커피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10) 우리 조직은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긴다.				
11) 우리 조직은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여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Part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예방·대응 제도

※ 성희롱·성폭력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 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범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따라서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및 상사와의 지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말과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언어적·시각적·기타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강간(미수), 온라인 성범죄 및 불법촬영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17개 사항이 포함된다.

3.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사항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1) 연 1회 이상,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홍보한다.			
3)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항상 게시한다.			
4)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5)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구제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3-1. (3번 1) 문항에서 '예' 응답자)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받으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내부 직원에 의한 교육 실시
- ② 외부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실시
- ③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한 교육 실시(단,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④ 인터넷을 통한 교육 실시(단순히 이메일로 교육 자료 배포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 ⑤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실시
- ⑥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으로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성희롱 예방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음
- ⑦ 해당 없음

3-2. (3번 1) 문항에서 '예' 응답자)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받으신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습니까?

구 분	포함됨	포함 안 됨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기타(예: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			

3-3. (3번 1) 문항에서 '예' 응답자)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받으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④ 매우 도움

Part 3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당한 경험

4. 최근 조직의 상급자나 기관의 상급기관 등이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갑질 사례'가 언론에 빈번히 공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이 신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5.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나 상사 및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1)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		
2)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당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 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 당했다.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 는 힘든 업무를 하였다.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7)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8)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롱당했다.		
9)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당했다.		
11)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들었다		
12) 다른 사람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었다		
13)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을 강요당했다		
14)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당했다		
15) 기타(구체적으로 작성_____)		

5-1. (5번 질문에서 '있음' 이라고 응답한 자, 응답항목별 질문)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의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9회	⑤ 10회 이상
1)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					
2)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당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 당했다.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하였다.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7)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8)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롱당했다.					
9)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당했다.					
11)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들었다					
12) 다른 사람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었다					
13)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을 강요당했다					
14)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당했다					
15) 기타					

5-2. (입사 이후 현재까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자, 개별 응답항목별 질문)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 | |
|---------------------|---------------------|-----------|
| ① 기관의 임원(상근) | ② 기관의 임원(비상근) | ③ 상급자, 상사 |
| ④ 동료 | ⑤ 후배, 하급자 | ⑥ 소속 선수 |
| ⑦ 소속 지도자(코칭스텝) | ⑧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 |
| ⑨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Part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한 경험

6.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1)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다리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2)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 성적 이야기 등을 하는 행위 (전화통화 포함)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가슴,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훑어보거나 쳐다보는 행위		
7) 원하지 않는데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8) 고의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혹은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임명, 임금인상 등) 제안하는 행위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12) 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15)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거나, 실제 성관계를 한 행위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16)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온 라인, SNS 등으로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 ※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 등은 제외		
17)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 판매하는 행위		

6-1. (6번 질문에서 '있음' 이라고 응답한 자, 응답항목별 질문)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의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9회	⑤ 10회 이상
1)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다리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2)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 성적 이야기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폐하는 행위					
4)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하는 행위					
5) 화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가슴,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훑어보거나 쳐다보는 행위					
7) 원하지 않는데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8) 고의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혹은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12) 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구 분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9회	⑤ 10회 이상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15)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거나, 실제 성관계를 한 행위					
16)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온라인, SNS 등으로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 ※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 등은 제외					
17)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 판매하는 행위					

6-2. (입사 이후 현재까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자, 개별 응답항목별 질문)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기관의 임원(상근) ② 기관의 임원(비상근) ③ 상급자, 상사
 ④ 동료 ⑤ 후배, 하급자 ⑥ 소속 선수
 ⑦ 소속 지도자(코칭스텝) ⑧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⑨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3. (입사 이후 현재까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자, 개별 응답항목별 질문)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회의나 미팅장소 ② 직장 내 사무공간 ③ 회식장소
 ④ 교류 모임을 위한 장소(동아리, 워크숍 등)
 ⑤ 기타(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 _____)

Part 5

직장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7.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직장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1)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		
2)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당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켰다.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하였다.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 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7)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8)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 정받지 못하거나 조롱당했다.		
9)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인 대우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당했다.		
11)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들었다		
12) 다른 사람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었다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13)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을 강요당했다		
14)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당했다		
15)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7-1. 귀하께서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Part 6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8.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1)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다리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2)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 성적 이야기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하는 행위		
5) 화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가슴,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훑어보거나 쳐다보는 행위		
7) 원하지 않는데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8) 고의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혹은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12) 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구 분	최근 1년 이내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15)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거나, 실제 성관계를 한 행위		
16)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온라인, SNS 등으로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 ※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 등은 제외		
17)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 판매하는 행위		

8-1. 귀하께서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Part 7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대응

9. (5번, 6번 질문에서 '있음' 이라고 응답한 자, 응답항목별 질문)최근 1년 이내에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특별한 후유증이 없었다
- ② 불안감
- ③ 무기력/우울감
- ④ 분노/적개심/복수심
- ⑤ 수치심
- ⑦ 죄책감
- ⑧ 수면장애(불면증, 악몽 등)
- ⑨ 대인기피(친밀관계 공포)
- ⑩ 식욕저하 혹은 폭식
- ⑪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해
- ⑫ 알코올, 약물남용
- ⑬ 기타(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_____)

9-1. (5번, 6번 질문에서 '있음' 이라고 응답한 자, 응답항목별 질문)최근 1년 이내에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중복응답 가능)

- ① 조직 내부 상담부서에 신고(☞문9-2로)
- ② 조직 내부(상담부서), 외부(고충상담기관)에 모두 신고하였다(☞문9-2로)
- ③ 조직 내부 상담부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주변 동료나 상급자에게 알렸다(☞문9-2로)
- ④ 내외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변동료나 상급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문9-3로)
- ⑤ 기타(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_____)

9-2. (6번 질문에서 있음, 9-1번 질문에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응답자)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직장 내에 알렸을 때, 어떤 조치나 대응이 있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하였다.			
3)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			
4)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었다.			
4-1)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4-2)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6)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 보고 받은 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 등의 비밀을 지켰다.			

9-3. (5번, 6번 질문에서 '있음', 9-1번 질문에서 ④ 또는 ⑤ 응답자) 내 외부 기관이나 주 변동료,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해 주세요.

- ①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 ② 성폭력인지 몰라서
- ③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 ④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 ⑤ 수치스러운 일이라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 ⑥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 ⑦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⑧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 ⑨ 가해자가 협박해서
- ⑩ 기타(구체적으로_____)

10. 귀하가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 ② 응답자만 10-1로 이동

10-1. 체육 관련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경력유지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 ② 선후배 등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일반적 특성이므로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 ③ 성폭력 등 문제가 불거질 경우 회사차원에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어 감추기 때문에
- ④ 성폭력 등 관련 규정(처벌 규정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 ⑤ 조직 자체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전담부서, 신고센터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 ⑥ 성폭력 등 신고센터가 있어도 신뢰가 부족하여 성폭력 등 괴롭힘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 ⑦ 성폭력 등 문제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 ⑧ 기타(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 _____)

11. 체육 관련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포함) 방지를 위한 방안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항목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임원, 직원 등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② 직장 내 고충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피해 발생시, 상담할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 ③ 피해 사건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매뉴얼, 가이드라인, 규정 등)를 마련한다
- ④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히 처벌한다
- 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 전담 부서 등을 마련한다
- ⑥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 ⑦ 위계적,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한다
- ⑧ 임원, 부서장, 관리자 등에 일정 수의 여성이 배치되도록 한다
- ⑨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별다른 해결책은 없다
- ⑩ 기타(_____)

12. 체육 관련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3. 체육 관련 단체·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최근 1년 이내 피해 사례, 직접 당한 사례 혹은 목격한 사례)와 이러한 문제의 원인 그리고 이에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심층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심층인터뷰 내용이나 선생님의 신상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